

직무발명보상제도(V)

목 차

I.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3.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직무발명 관련 규정
1. 직무발명제도의 배경	4.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1. 특허법
2.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IV.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2. 발명진흥법
3. 직무 발명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1. 보상의 종류	3. 발명진흥법시행령
II. 직무발명의 개념과 요건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 금 청구권)의 성격	4. 근로복지기본법
1. 직무발명의 개념	3. 보상액의 결정기준	5.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관한법률
2. 직무발명의 요건	4. 보상금의 산정방법	6.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
3. 대학교수의 발명	V.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7.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 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4. 퇴직후의 발명	1. 필요성	8. 기술이전촉진법
III. 직무발명의 효과	2.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9.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1. 개선	3.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2.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	4. 직무발명의 평가	

V.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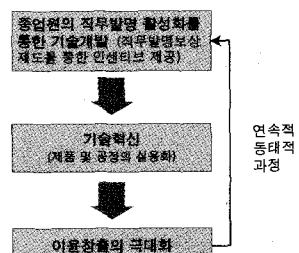
1. 필요성

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윤창출의 극대화에 있으며, 이윤창출의 극대화는 단순히 물품의 판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가능하며, 기술개발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산업체권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산업체권 보유건수의 증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더욱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체의 발명이 이윤창출과 연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고, 완성된 발명을 실용화하여 이윤창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단선적·정태적 과정이 아닌 연속적·동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윤창출의 극대화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종업원의 기술적 창작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 제도의 마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마련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① 직무발명의 정의

② 직무발명자의 자격

③ 종업원의 발명을 회사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 직무발명 여부의 결정 및 승계절차

④ 종업원발명에 대한 출원 여부의 결정

⑤ 발명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⑥ 직무발명위원회에 관한 규정

- 구성, 심의 또는 의결사항 등

⑦ 보상에 관한 규정

- 보상액 결정기준, 보상의 종류 및 보상액,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금 취급 등

⑧ 직무발명한 종업원의 의무

- 비밀의무, 협력의무 등

⑨ 기타

- 자사직원이 타회사 직원과 공동으로 직무 발명을 했을 경우의 취급규정
- 촉탁이나 용역에 의하여 발명을 했을 경우의 취급 규정

3.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종업원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승계할 것인지는 그 기업의 조직, 경영방침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발명의 신고

종업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했을 경우 발명의 목적,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첨부한 발명신고를 소속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회원동정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봉고/프레지오의 누계판매 대수가 200만대를 돌파했다. 기아차는 봉고가 지난 '80년 봉고 1톤 트럭을 시작으로 총 140만대가 판매되었고 '81년 출시된 봉고 승합모델은 베스타와 프레지오를 거쳐 60만대가 판매되어 총 200만대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81년 당시 기아차는 정부

의 자동차공업 합리화조차로 인해 동아자동차와의 합병설 등 회사의 존폐위기에 놓인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때 기아차가 재기의 비책으로 내놓은 카드가 바로 “봉고”였다. 1톤짜리 트럭을 12인승 승합

**기아차 봉고 200만대 판매 신화
80년 봉고 1톤 트럭 출시 이후
누적 판매대수 200만대 돌파**

차로 개조하여 내놓은 봉고는 당시 공전의 히트를 기록, 기아차의 화려한 부활을 주도하였다. 기아는 “봉고신화” 덕택에 경영 정상화 뿐만 아니라 프라이드(87년)의 성공을 디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현재 봉고 트럭은 지난 6월 5,277대가 판매되는 등 상반기에만 36,300대가 판매되며 20년 이상의 인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출처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나. 승계여부 등의 결정

특허담당부서의 장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직무발명위원회를 소집하여 직무발명의 여부, 발명의 평가, 승계여부, 출원여부, 심사청구 유무 등을 결정한다.

다. 발명자에게 통보

사용자는 소속부서의장을 경우하여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발명의 평가 결과, 승계 여부, 출원여부를 통보한다.

라. 권리의 승계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권리의 승계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사항에 협력해야 한다.

여기서 행정적 사항이란 당해 직무발명의 양도증서 작성, 기술적 사항으로는 출원시 또는 심사시 당해발명에 대하여 기술적 협력을 들 수 있다.

마. 이의 제기

종업원이 사용자의 발명의 평가, 승계여부, 출원여부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출원

사용자가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특허출원하고, 사용자가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직무발명의 평가

종업원의 발명에 관하여 신고가 있을 경우 발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출원할 것인지, 그리고

등록된 권리의 경우 계속 존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을 평가해야 한다.

직무발명의 평가는 출원여부, 특허권의 취득, 승급 및 포상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정확한 평가는 발명자의 정확한 업적 평가와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가. 평가주체

직무발명의 평가주체로 특허담당부서를 들 수 있겠으나 발명자의 의견과 사업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정확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 직무발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평가항목

직무발명의 평가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특허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기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 권리의 독점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 및 업종, 판단시기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가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출원시에는 특허성이 중요시될 수 있지만 연차료 납부시에는 권리의 기술적 가치와 독점성이 중요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평가시기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의 평가시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평가하기도 한다.

(1) 발명의 완성시

발명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2) 출원시

출원하여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등)으

로 관리할 것이지 Know-How로서 관리할 것이지
와 출원한다면 해외출원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3) 심사청구시

일단 출원한 후 방어출원으로 그냥 둘 것이지
아니면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심사청구
를 한다면 특허청구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4) 권리존속시(연차료 납부시)

일단 등록된 권리의 존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5) 기타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 당해 직무발
명의 처분여분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판단시기 및 배점				
	출원시	심사 청구시	권리 존속시	실시 보상시	외국 출원시
1. 발명의 독창성(신규성, 진보성)	39	35	4	5	27
2. 권리의 독점성	13	15	24	9	16
3. 실시에 있어 기술적 가치	11	15	14	11	11
4. 타사기술의 견제도	9	9	13	5	10
5. 이의액(율)	-	2	4	29	9
6. 실시화 가능성	4	9	12	1	9
7. 자사기술과의 관련 정도	5	4	8	3	4
8. 제품에 있어 당해 권리가 치지하는 비율	2	1	3	12	3
9. 기술의 수명	2	2	11	4	3
10. 발명의 동기 및 발명자의 노력도	2	2	2	14	2
11. 기타	13	6	5	7	6
총 계	100	100	100	100	100

* 기타에는 대체기술의 유무, 기술의 파급효과, 선전효과, 품질의 성능 향
상도, 실시규모, 근속연수, 침해발견 용이도, 제품의 수출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 출처 : 일본발명협회, 職務發明と補償金, 1988, p52~54 재구성

직무발명 관련규정

9.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① 기술이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에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
발관련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 “이라함
은 산업 및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구개
발사업에 소요되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
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
체

② 법 제2조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
관”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농림부·보건복지
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제3조(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당기관별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
화에 관한 연간추진계획을 당해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
도 10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 분야별 기
술이전 및 사업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 15일까
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대
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준의 수립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수립
3.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성과의 민간이전 방안의 수립 · 조정
4.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 · 조정
5.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심의회의 구성 · 운영 등)

-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⑥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 ① 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정관기재사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시 잔여재산시 귀속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거래소의 기타 사업) 법 제6조 제3항 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거래 · 이전 및 평가에 관한 기법 등의 연구 · 개발 및 보급
2. 기술거래 · 이전 및 평가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
3. 기술거래 · 이전 및 평가에 관한 수요조사 분석
4.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거래소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9조(거래소의 수익사업 등) 거래소는 법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거래소에의 출자 등)

- ① 거래소는 법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탁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 · 방법 및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2. 출자금 · 융자금 또는 출연금의 금액 및 그 납입 또는 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 · 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출연금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납입 또는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거래기관의 지정 등)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 3. 지정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거래기관의 수행사업) 법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보의 공동활용·확산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3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평가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 3. 지정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

고할 수 있다.

제14조(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기타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 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 ②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함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에는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과 추진실적 등 매년도의 운영결과를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국·공립학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2. 특허등의 출원·등록·이전 및 활용
3. 기술이전 및 활용에 의한 수익금의 배분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산업계의 연구성과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제15조(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①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지원대상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

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고, 그 지원비용은 당해 사업비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민간 기술이전 전문기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과 관련하여 수행한 사업추진실적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반 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기술거래관련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당해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기술관련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술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개발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기술행정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등록한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기술거래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상담 · 자문 및 지도와 기술의 매매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사의 업무수행방법 · 범위 및 절차 등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거래소가 이를 정한다.

제17조(연구자에 대한 성과배분)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성과금은 당해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공무원(법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 설치된 국 · 공립학교의 교직원을 제외한다)으로서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 · 권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조건 및 이용 허락 등)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당해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
-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고자 하는자가 없는 경우
-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1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귀속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하여 제1항의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전담 조직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출연금 등의 지급)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거래소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7. 16〉

1. 중업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산업기반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기금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제2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이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이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양여, 사

용·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의한다.

제22조(기술이전정보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서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여 개발한 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단체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②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당해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술의 명칭과 내용(기술의 이용분야를 포함한다)
 4. 이용조건
 -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정보등록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전문인력의 양성) 법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과 또는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사업예산절감 장려금) 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 등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심의회에서 정한다.

부칙(제16489호, 2000-06-23)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술이전정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내용에 대한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이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